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37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29.

발 의 자 : 신동근 · 소병훈 · 김현권

서영교 · 오영훈 · 민홍철

윤일규 · 서형수 · 이동섭

박찬대 · 이철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,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·시설 및 물자 등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,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.

이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,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55조).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실시하여야”를 “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5조(보건의료 실태조사)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,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·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55조(보건의료 실태조사) ① 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----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